

2019 아티언스 캠프 예산 편성 기준

목	세	세세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기획비	○ 프로그램 기획비는 1인당 2,000,000원 이내 지급 - 동일인이 프로그램 기획과 프로그램 내 강의, 멘토, 관리, 진행 등을 위한 인력으로 참여 시 한 개 목의 인건비만 지급 가능 (중복 지급 불가) ※ 기획비는 프로그램 규모에 따른 구성 인원 수를 고려, 필요 시에 인정 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 및 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강사 교통비	○ 참여 강사(전문가)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- 교육장소 간 거리 기준 -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계산 -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- 단,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 colspan="2">30-100km</th><th colspan="2">101-200km</th><th colspan="2">201-300km</th><th colspan="2">301-400km</th></tr><tr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30-40</td><td>7,000</td><td>101-120</td><td>12,000</td><td>201-220</td><td>24,000</td><td>301-320</td><td>44,000</td></tr><tr><td>41-60</td><td>8,000</td><td>121-140</td><td>14,000</td><td>221-240</td><td>28,000</td><td>321-340</td><td>48,000</td></tr><tr><td>61-80</td><td>9,000</td><td>141-160</td><td>16,000</td><td>241-260</td><td>32,000</td><td>341-360</td><td>52,000</td></tr><tr><td>81-100</td><td>10,000</td><td>161-180</td><td>18,000</td><td>261-280</td><td>36,000</td><td>361-380</td><td>56,000</td></tr><tr><td>-</td><td>-</td><td>181-200</td><td>20,000</td><td>281-300</td><td>40,000</td><td>381-400</td><td>60,000</td></tr><tr><th colspan="2">401-500km</th><th colspan="2">501-600km</th><th colspan="2">601-700km</th><th colspan="2">701km 이상</th></tr><tr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th>왕복거리</th><th>금액</th></tr><tr><td>401-420</td><td>64,000</td><td>501-520</td><td>84,000</td><td>601-620</td><td>104,000</td><td>701-</td><td>124,000</td></tr><tr><td>421-440</td><td>68,000</td><td>521-540</td><td>88,000</td><td>621-640</td><td>108,000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4"></td></tr><tr><td>441-460</td><td>72,000</td><td>541-560</td><td>92,000</td><td>641-660</td><td>112,000</td></tr><tr><td>461-480</td><td>76,000</td><td>561-580</td><td>96,000</td><td>661-680</td><td>116,000</td></tr><tr><td>481-500</td><td>80,000</td><td>581-600</td><td>100,000</td><td>681-700</td><td>120,000</td></tr></tbody></table> ※ 30km이상이라도 같은 시·군·구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※ 서울-제주는 항공비 실비 지급 및 제주공항-교육장소 간 거리 계산하여 지급 ※ 거리 기준에 따른 교통보조금 지급의 경우 별도, 증빙자료 제출 없음 ☞ 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	30-100km		101-200km		201-300km		301-400km	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30-40	7,000	101-120	12,000	201-220	24,000	301-320	44,000	41-60	8,000	121-140	14,000	221-240	28,000	321-340	48,000	61-80	9,000	141-160	16,000	241-260	32,000	341-360	52,000	81-100	10,000	161-180	18,000	261-280	36,000	361-380	56,000	-	-	181-200	20,000	281-300	40,000	381-400	60,000	401-500km		501-600km		601-700km		701km 이상	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401-420	64,000	501-520	84,000	601-620	104,000	701-	124,000	421-440	68,000	521-540	88,000	621-640	108,000			441-460	72,000	541-560	92,000	641-660	112,000	461-480	76,000	561-580	96,000	661-680	116,000	481-500	80,000	581-600	100,000	681-700	120,000
		30-100km		101-200km		201-300km		301-400k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0-40	7,000	101-120	12,000	201-220	24,000	301-320	4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1-60	8,000	121-140	14,000	221-240	28,000	321-340	4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1-80	9,000	141-160	16,000	241-260	32,000	341-360	5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1-100	10,000	161-180	18,000	261-280	36,000	361-380	5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-	181-200	20,000	281-300	40,000	381-400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1-500km		501-600km		601-700km		701k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왕복거리	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01-420	64,000	501-520	84,000	601-620	104,000	701-	124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21-440	68,000	521-540	88,000	621-640	108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41-460	72,000	541-560	92,000	641-660	11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61-480	76,000	561-580	96,000	661-680	116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81-500	80,000	581-600	100,000	681-700	1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초빙 강사료 (연수 등)	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 ○ 강사비는 1일 최대 3시간 이상 책정 가능 / 단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필요 시 인정 * 현장학습, 해커톤, 실연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가 활용 시간 자율 편성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구 분</th><th>등급</th><th>지급금액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 rowspan="3">강사료</td><td>1등급*</td><td>250,000/시간</td></tr><tr><td>2등급*</td><td>150,000/시간</td></tr><tr><td>3등급*</td><td>100,000/시간</td></tr></tbody></table> 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·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·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·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	구 분	등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2등급*	150,000/시간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2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운영비
(210)

일반
수용비
(01)

행사 진행자	구 분	등급	지급금액		
	행사료	1등급*	200,000/시간		
		2등급*	150,000/시간		
		3등급*	100,000/시간		
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	
전문가 활용비 (학술 행사)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
	학술 행사비	1등급*	발표자 500,000(*3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3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· 3시간 이내일 경우 (*) 금액 적용 · 국외 : 실소요액	
		2등급*	발표자 400,000(*200,000)/1일 사회자 300,000(*200,000)/1일 토론자 200,000(*200,000)/1일		
		3등급*	발표자 200,000(*100,000)/1일 사회자 150,000(*100,000)/1일 토론자 100,000(*100,000)/1일		
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	
심사 및 자문료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
	심사료 및 자문료	1등급	200,000원	· 2시간 기준 · 2시간 이상 : 150% · 5시간 이상 : 200% · 국외 : 실소요액	
		2등급			
		3등급	100,000원		
○ 자문료 지급 관련 -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-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※ 1~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				
원고료	구 분	지급금액			
	원고료(외부인사)	○ 40,000원/장 (A4 1매 800자 기준)			
※ PPT의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					
번역료 및 감수료	구 분	지급금액			
	번역료	○ 외국어 ⇒ 한글 : 3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
		○ 한글 ⇒ 외국어(영,일) : 60,000/A4 1매(800자)			
		○ 외국어 ⇒ 기타외국어 : 60,000/A4 1매(250단어 또는 800자)			
○ 외국어 번역시 1장미만 5만원 / 한국어번역시 1장미만 10만원					
감수료	○ 필요시 번역료의 20%반영				
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	구 분	등급	지급금액	비 고	
	편곡	1등급	500,000원/곡	* 30마디 이하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차감 지급 * 80마디 이상의 곡, 편곡료에서 50% 추가 지급 * 재편곡, 재편성,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/2 만 지급	
		2등급	400,000원/곡		
		3등급	300,000원/곡		
	작곡	* 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			
	감수료	등급무관	50,000원	· 곡당 50,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,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,000원을 지급	
※ 1등급 : 국·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: 국내 시·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: 국내 음악대학,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					
기타 진행비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소모품 구입비, 현장주차비 등				
	※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비 및 식비는 사업추진비(240-01)로 책정·활용				
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안내· 홍보물 제작비	○ 팜플렛, 현수막 등 사업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○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,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※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			
		인쇄비	○ 자료 및 보고서, 책자, 사례집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○ 조달청 기준 참고			
		회계 검사 수수료	○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 기준액(부가세 포함) ○ 회계검사수수료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교부 시 교부내역서에 회계 검사 소요경비(수수료)로 포함			
			기준금액	수수료	기준 금액	수수료
			1천만원 미만	282,000	7천만원 이상~8천만원 미만	590,000
			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	282,000	8천만원 이상~9천만원 미만	632,000
			3천만원 이상~4천만원 미만	336,000	9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	674,000
			4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	365,000	1억원 이상~2억원 미만	848,000
운영비 (210)	공공 요금 및 제세 (02)	공공 요금	○ 워크숍, 세미나, 포럼, 자문회의 등 행사진행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 발송, 컵서비스, 보험료 등 ○ 우편통신요금 등			
		임차비 (07)	○ 차량 임차 : 실비적용 -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,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- 특히,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 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 및 지원기준 마련하여 지원 ○ 장소 임차 : 참여 인원 고려에 따른 적정 장소 임차 가능 - 문화기반시설 :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문예회관, 지방문화원, 문화의 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공공문화시설 - 숙박시설 이용 : 광역시의 경우 1인 60,000원(1박) 책정 가능 ○ 기자재 임차 : 구입보다는 대여 권장			
	위탁 사업비 (15)	외주 업체 용역비	○ 행사 대행업체 용역, 디자인 용역, 영상물 제작 용역(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 업 제외), 홍보(프로모션) 대행업체 용역, 구매(제작용역) 등 ☞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비교견적 시행			
	업무 활동비 (240)	사업 추진비 (01)	○ 다과비 기준단가: 3,000원 / 1인 1식 기준 ○ 회의식비 기준단가: 10,000원 / 1인 1식 기준 ※ 본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※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회의식비 책정 필요			
인건비 (110)	일용 임금 (03)	보조 인력	○ 단기용역비(일용직): 67,000원 / 최대 1일 8시간 ※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,350원 적용 ※ 연간 30일 이내 활용			